

# 외국인 편입학생 학사 시행 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학칙」 제36조 와 「학칙 시행내규」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외국인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및 졸업사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점인정)** 편입학한 외국인학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본교 「학칙 시행내규」 제32조 에 따른다.

**제3조(학점이수기준)** ① 편입학한 외국인학생의 학점이수 기준은 본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준수한다.

② 2학년, 3학년, 4학년에 편입학한 외국인학생의 학점이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학년	교양	전공학점(필수 및 선택)				졸업이수학점
		단일 전공만 선택	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선택시			
			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2학년	-	60	40	21	36	90
3학년	-	40	40	21	36	60
4학년	-	30	-	-	-	30

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4학년에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희망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본교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에 따르며 각 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. 단, 졸업시점은 본인이 희망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만 가능하다.

**제4조(졸업사정 기준)** 외국인 편입학생의 졸업사정 기준 및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본교 「학칙」 과 「학칙 시행내규」 「교육과정편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」 및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한다.

**제5조 (기타)**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